의안번호	2213668
의 뢰 인	최은석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7.
추계번호	25F567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– 어업 및 농업 분야 지방세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어업 및 농업 분야의 지방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208.4억원, 2030년 303.1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,008.9억원(연평균 401.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○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: 4년간 833.6억원(연평균 208.4억원) 감소

○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연장: 4년간 1175.3억원(연평균 293.8억원) 감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(안 제10조제1항)	−208.4	−208.4	−208.4	−208.4		−833.6	−208.4
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(안 제167조)		−284.7	−290.7	−296.8	−303.1	−1,175.3	−293.8
합 계	−208.4	−493.1	−499.1	−505.2	−303.1	−2,008.9	−401.8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)	○ 농어업인(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포함) 융자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2	안 제167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	○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 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10조제1항 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)	○	-
2	안 제167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감면의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한다고 가정

○ 단, 개정안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(제167조)의 경우 징수기준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

❑ (안 제10조제1항)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
○ 최근 5년(2019~2023)간 감면액이 등락하며 안정된 추이를 보이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- 최근 5년간 연평균 등록면허세 감면실적: 208.4억원

❑ (안 제167조) 향후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분포는 2024년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며,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의 감면실적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

○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일반법인의 법인세율 체계를 적용한 경우의 산출세액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

- 조세지출예산서상 실적을 추계에 활용하되, 2024년 이전 감면실적은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법인의 세율 인하를 반영해 조정한 후 활용

○ 조정된 과세특례의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5년('20~'24년)간의 실적 증가 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- 최근 5년 연평균 실적 증가율: 2.1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농어업인 등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❑ (제도개요) 상호금융기관의 농어업인 융자 시의 융자담보물 등기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 포함)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

○ 감면액: 등록면허세의 50%

○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9년 12월 31일

❑ (추계방법) 2019년 236.3억원에서 2021년 260.3억원까지 증가, 이후 2023년 130.2억원까지 감소하여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○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연평균 감면실적: 208.4억원

[표 2]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236.3	252.4	260.3	162.9	130.2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 , 각 년도

(2) 추계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할 경우, 등록면허세는 2026년 208.4억원, 2029년 208.4억원 등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총 833.6억원(연평균 208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9년, 등록면허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(안 제10조제1항)	−208.4	−208.4	−208.4	−208.4	−833.6	−208.4

나.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167조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❑ (제도개요) 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일반법인과 달리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고,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특례

○ 일반법인과 달리 조합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시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, 접대비 등 8가지 항목만을 손금불산입하고 0.9~1.2%의 저율과세 적용

[표 4] 일반법인과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비교

구 분		일반법인	조합법인
적용대상		일반법인	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중소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엽연초생산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
과세표준		당기순이익 + 익금산입, 손금불산입 − 손금산입, 익금불산입 =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-비과세소득−소득공제 = 과세표준	당기순이익 + 손금불산입(기부금 등 8개 항목 1)) = 과세표준
과표 구간별 세율	2억원 이하	0.9%	0.9%
	2~20억원	1.9%	
	20~200억원		1.2%
	200~3,000억원	2.1%	
	3,000억원 초과	2.4%	

주: 1) 기부금, 접대비, 대손금, 대손충당금, 과다경비, 업무무관비용, 지급이자,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

❑ (감면실적)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실적은 2020년 327.1억원 수준에서 2023년 511.3억원으로 증가한 후, 2024년 328.9억원 수준

○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실적은 「조세지출예산서」상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 감면실적에 10%를 적용하여 산정

○ 2024년 특례실적 감소는 법인실적의 부진 외에도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가 2023년 귀속소득부터 반영된 결과

[표 5]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실적: 2020~2024년, 지방소득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0	2021	2022	2023	2024
감면실적	327.1	334.7	423.0	511.3	317.3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❑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우선 2020~2023년간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실적을 조정한 후, 2020~2024년간 조정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정

○ 2024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으로 산정한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에 따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6] 조합법인의 과표구간별 과세표준, 세율 및 산출세액: 2024년 신고기준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과표구간별</th><th rowspan="2">법인수
(개)</th><th rowspan="2">과세표준
(억원)</th><th colspan="2">과세특례 적용</th><th colspan="2">과세특례 미적용</th><th rowspan="2">세수효과
(A−B)</th></tr>
<tr><th>세율
(%)</th><th>산출세액
(A,억원)</th><th>세율[1)]
(%)</th><th>산출세액
(B,억원)</th></tr>
<tr><td>합 계</td><td>3,172</td><td>41,728</td><td>−</td><td>423.6</td><td>−</td><td>740.9</td><td>−317.3</td></tr>
<tr><td>2억원 이하</td><td>855</td><td>615</td><td rowspan="2">0.9</td><td>5.7</td><td>1.0</td><td>5.5</td><td>0.2</td></tr>
<tr><td>2~20억원</td><td>1,801</td><td>15,092</td><td>136.1</td><td rowspan="2">2.0</td><td>250.7</td><td>−114.6</td></tr>
<tr><td>20~200억원</td><td>511</td><td>24,745</td><td rowspan="2">1.2</td><td>266.9</td><td>459.9</td><td>−193.0</td></tr>
<tr><td>200~3,000억원</td><td>5</td><td>1,276</td><td>15.0</td><td>2.2</td><td>24.7</td><td>−9.7</td></tr>
</table>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2024년 과표구간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특례실적을 조정

– 2024년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표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통해 세법개정 전후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

[표 7] 2022년 세법개정 효과에 따른 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 조정내역: 2024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A,개)	과세표준 (B,억원)	1인당 과세표준 (C=B/A, 억원)	특례 미적용시					
		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	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		
				세율 (D,%)	산출세액		세율 (D',%)	산출세액	
					1인당 (E=C×D,억원)	전체 (F=E×B,억원)		1인당 (E'=C×D',억원)	전체 (F'=E'×B,억원)
합 계	3,172	41,728	–	–	–	1198.8	–	–	1,115.4
2억원 이하	855	615	0.7	1.0	0.01	6.2	0.9	0.01	5.5
2~20억원	1,801	15,092	8.4	2.0	0.3	590.0	1.9	0.3	542.5
20~200억원	511	24,745	48.4		1.1	576.7		1.1	542.7
200~3,000억원	5	1,276	255.2	2.2	5.2	26.0	2.1	4.9	24.7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– 이를 바탕으로 특례실적을 조정할 경우, 2024년 기준 10.8%의 실적이 하향 조정

[표 8]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감면실적 조정: 2024년 신고기준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특례적용시 산출세액(A)	특례 미적용시				실적조정률 ([C−E]/C)
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		
		산출세액(B)	특례실적 (C=A−B)	산출세액(D)	특례실적 (E=A−D)	
산출세액	423.6	1198.8	691.8	1,115.4	775.1	−10.8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– 2024년 기준으로 2020~2023년간 감면실적을 조정하여 살펴보면, 최근 5년간 특례실적은 연평균 2.1% 증가함

[표 9]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감면실적 조정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가율 ('20~'24)
특례 실적	조정전(A)	327.1	334.7	423.0	511.3	317.3	–
	조정후 (A×[1−10.8%])	291.9	298.7	377.5	456.3	317.3[1)]	2.1

주: 1) 2024년 실적은 세법개정이 적용된 2023년 귀속소득을 바탕으로 발생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향후 세수효과는 2024년 실적에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가율(2.1%)을 반영하여 추계

(3) 추계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어업 및 농업 분야의 지방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7년 284.7억원, 2030년 303.1억원 등 2027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총 1,175.3억원(연평균 293.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0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0년, 법인지방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(안 제167조)	−284.7	−290.7	−296.8	−303.1	−1,175.3	−293.8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−6788−4838	useuplee@assembly.go.kr